

『문신시술 표준지침』 Q&A



보건복지부

KHEPi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목 차 〉

1. 시설 및 위생관리	1
1-1. 시설 및 설비	1
Q1) 업소를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 시 반드시 벽체로 구획해야 하는지, 파티션으로 구획해도 되는지? 시술구역의 시술대와 시술대 사이는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 ..	1
Q2) 지침에 제시된 문신업소 구획 예시도의 배치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1
Q3) 문신업소로 등록하기 위한 별도 면적규정이 있는지?	2
Q4) 시술구역의 손위생 시설과 세척·소독구역의 세척용 싱크대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지?	2
Q5) 시술대(시술베드) 위생관리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2
Q6) 배리어 필름(커버)을 씌워 사용하면 기구의 세척·소독을 생략할 수 있는지?	2
Q7) 문신업소는 멸균실을 반드시 두거나 또는 멸균기를 필수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3
Q8) 문신용품을 해외직구하여 사용하여도 되는지?	3
Q9) 문신사는 일반의약품만을 취득·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관련하여 사용가능한 의약품의 종류, 취득경로(방법), 관리 등 상세내용이 궁금합니다.	3
Q10) 문신용 바늘과 머신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지? 확정 전까지는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4

1-2. 개인보호구 및 감염예방 4

- Q1) 시술 단계별로 청결장갑과 멸균장갑 중 무엇을 착용해야 하는지?
멸균 포장의 개봉과 멸균장갑 착용은 어떤 순서로 하는지? 4
- Q2) 손씻기와 손소독은 각각 언제 해야 하는지? 손씻기를 손소독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4
- Q3) '높은 수준의 소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는지? 5
- Q4) 폐기물 용기는 종류별로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 5

1-3. 폐기물 및 오염물질 관리 5

- Q1)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님에도, 의료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혈액이나 체액이 묻지 않은 거즈, 면봉 등도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
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5
- Q2) 추후 업소별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해야 하는지? 6

2.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 및 실시방법 6

2-1. 시술 전 이용자 동의 등 6

- Q1) 문신시술 전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어떤 경우 시술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까? 6

2-2. 부작용 및 응급상황 시 대응 6

- Q1) 응급상황 발생 시 문신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6

3. 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 7

3-1. 의무사항 7

Q1) 위생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7

Q2) 현재 문신업 전용 책임보험 표준 상품이 부재하여 가입 자체가 곤란한데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는지? 7

3-2. 금지행위 8

Q1) 문신사는 문신제거행위를 할 수 없는데 문신 수정은 가능한지? ... 8

Q2) 업소 외 시설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경우'는? 이 경우 시설·위생 기준은 어떻게 충족하는지? 8

4. 문신사 제도 시행 준비 관련 9

4-1. 면허 및 국가시험 9

Q1) 문신사법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포함되는지? 9

Q2)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을 구분하여 따로 시험을 보거나 면허를 받게 되는지? 9

4-2. 개설등록 및 영업 9

Q1) 현재 세무서마다 사업자등록 개설 가능 여부가 각각 다른데 문신사법이 제정된 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9

Q2) 임시개설등록은 현업 종사자에 한정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해당 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빙하는지? 10

4-3. 향후일정 10

Q1) 문신사 제도 준비 관련 향후 일정이 궁금합니다. 10

Q2) 「문신사 표준 기술 지침」 내용은 확정적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10

1. 시설 및 위생관리

1-1. 시설 및 설비

Q1) 업소를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 시 반드시 벽체로 구획해야 하는지, 파티션으로 구획해도 되는지? 시술구역의 시술대와 시술대 사이는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

- A) 「문신시술 표준지침」 내 문신업소 구획 예시를 참고하시어 ‘벽체형’, ‘파티션형’ 중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단,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각 구역은 칸막이·파티션·가림막 등 비흡수성 재질을 사용하여 구획하여야 합니다.
- 시술구역의 시술대와 시술대 사이에는 파티션을 두거나 적정 간격(1.5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Q2) 지침에 제시된 문신업소 구획 예시도의 배치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 A) 지침의 문신업소 구획도는 ‘예시’로 제시되었으며, 반드시 동일한 형태로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 ①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을 명확히 구획하고 시술 시 이동을 최소화할 것
 - ② 세척·소독 동선이 세척 → 건조 → 포장 → 보관 순으로 한 방향이 되도록 배치할 것
 - ③ 위해(손상성) 의료폐기물 용기는 시술작업대에, 일반의료폐기물 용기는 시술구역 내에 둘 것

Q3) 문신업소로 등록하기 위한 별도 면적규정이 있는지?

A) 별도 면적규정은 없습니다.

Q4) 시술구역의 손위생 시설과 세척·소독구역의 세척용 싱크대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지?

A) 본 지침에서는 시술구역 손위생 시설과 세척·소독구역의 싱크대를 별도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업소 설비 환경 요인 등에 따라 별도 설치가 어려울 경우 겸용으로 1개만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세면대 겸용 사용 시 세부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Q5) 시술대(시술베드) 위생관리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A) 시술대(시술베드)의 커버와 이불은 타월, 린넨, 방수커버(비닐 등)가 가능하나 이용자 1인 시술마다 교체 또는 세척·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6) 배리어 필름(커버)을 씌워 사용하면 기구의 세척·소독을 생략할 수 있는지?

A) 생략할 수 없습니다. 배리어 필름은 시술 중 표면 오염을 줄이기 위한 보조수단이며 세척·소독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용한 재사용 기구는 배리어 필름 등을 제거한 후 세척하고, 높은 수준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7) 문신업소는 멸균실을 반드시 두거나 또는 멸균기를 필수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 A) 문신업소는 세척·소독 등과 관련한 감염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재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멸균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에서는 재사용 도구 등에 대하여 세척·소독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고, 멸균은 권고사항이며, 멸균실과 고압증기멸균기 등 멸균기 구비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Q8) 문신용품을 해외직구하여 사용하여도 되는지?

- A) 문신사법 제18조에 따라 문신행위에 사용하는 기구, 물품(염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해외 제품을 직구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또는 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9) 문신사는 일반의약품만을 취득·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하여 사용가능한 의약품의 종류, 취득경로(방법), 관리 등
상세내용이 궁금합니다.**

- A) 문신사법 제8조에 따라 문신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일반
의약품만을 취득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취제 품목·성분·농도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26년 하반기
식약처, 대한약사회 등과 논의할 예정이며, 향후 「일반의약품 안전사용
관리지침」을 통하여 현장에 안내하겠습니다.

**Q10) 문신용 바늘과 머신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지?
확정 전까지는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A) 바늘·머신의 의료기기 등급 분류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규정이 정해지기 전까지 바늘은 멸균 포장된 1회용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시고, 사용 전 포장 상태와 멸균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개인보호구 및 감염예방

**Q1) 시술 단계별로 청결장갑과 멸균장갑 중 무엇을 착용해야 하는지?
멸균 포장의 개봉과 멸균장갑 착용은 어떤 순서로 하는지?**

A) 준비·정리 단계에서는 청결장갑 착용을 권고하며, 시술 단계에서는 멸균 장갑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준비·정리 단계에서는 청결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손위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멸균 장갑은 포장을 먼저 개봉한 후(장갑에 접촉하지 않음), 시술 직전에 착용하여 사용합니다.

**Q2) 손씻기와 손소독은 각각 언제 해야 하는지?
손씻기를 손소독제로 대체할 수 있는지?**

A) 개인보호구(장갑 등) 착용 전, 시술 시작 전, 시술 종료 후에는 반드시 손씻기를 실시해야 하며, 손소독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외 준비·정리단계에서는 알코올이 60% 이상 함유된 손소독제로 손씻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Q3) '높은 수준의 소독' 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는지?**

- A) '높은 수준의 소독'은 영양성 세균, 결핵균, 대부분의 바이러스 및 진균을 제거하여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는 소독을 말하여,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70~90%), 차아염소산 나트륨(1:500으로 희석) 등의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폐기물 용기는 종류별로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

- A) 바늘 폐기를 위한 위해(손상성) 의료폐기물 용기는 시술작업대에 배치합니다. 혈액·체액이 묻은 일반의료폐기물과 혈액·체액이 묻지 않은 사업장일반 폐기물 용기는 시술구역에서 세척·소독구역으로 진입하는 앞쪽에 두어 청결 물품과 오염 물품의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합니다.

1-3. 폐기물 및 오염물질 관리

**Q1)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님에도, 의료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혈액이나 체액이 묻지 않은 거즈, 면봉 등도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
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 A) 문신행위는 침습적 행위이며, 문신업소는 다중이용시설로서, 감염 등 공중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폐기물로 배출·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늘 등은 손상성 의료폐기물에 해당하고, 혈액·체액이 묻은 거즈, 면봉 등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혈액이나 체액이 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Q2) 추후 업소별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해야 하는지?

- A)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법정 보관기간(일반의료폐기물 15일, 위해의료폐기물 30일) 내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소량 배출 업소의 위탁 비용 부담을 고려한 공동위탁·거점수거 방안은 관계기관 및 수거업체와 협의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2.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 및 실시방법

2-1. 시술 전 이용자 동의 등

Q1) 문신시술 전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어떤 경우 시술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까?

- A) ① 혈액매개감염병(B형·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② 뇌전증, 뇌졸중 등 뇌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 ③ 항응고제·아스피린 등 출혈 위험이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시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발급받고, 이를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2. 부작용 및 응급상황 시 대응

Q1) 응급상황 발생 시 문신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A) 문신 시술 도중 응급상황(의식저하, 실신 등)이 발생할 경우 119에 즉시 신고하고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한 후, 개설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

3-1. 의무사항

Q1) 위생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A) 문신사법에 따른 위생교육은 향후 지정되는 법정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교육 시수, 교육 과목, 교육 방식 등은 '26년 하반기 검토하여 하위 법령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생교육을 받았더라도 문신사법에 따라 의무 이수해야 하는 법정 위생교육이 면제되지 않으며, 이와 유사한 홍보문구를 사용하여 교육생 등을 모집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Q2) 현재 문신업 전용 책임보험 표준 상품이 부재하여 가입 자체가 곤란한데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는지?

A) 문신업 전용 책임보험·공제 상품 마련은 보험업계·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법 시행 전 추진될 예정입니다.

3-2. 금지행위

Q1) 문신사는 문신제거행위를 할 수 없는데 문신 수정은 가능한지?

A) 문신사법 제8조(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제3항에 따라 문신사는 문신 제거행위(문신행위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피부에 인위적으로 표시된 글자, 그림 또는 형태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문신제거행위를 한 경우 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라 문신사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문신업소는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또는 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업소 외 시설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유’는 어디까지인지? 이 경우 시설·위생 기준은 어떻게 충족하는지?

A) 문신업소 외 문신행위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와 이 때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위생·안전관리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4. 문신사 제도 시행 준비 관련

4-1. 면허 및 국가시험

Q1) 문신사법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포함되는지?

A) 현재 국가시험 시행 방식(필기, 실기), 시험과목 등 세부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26년 하반기 검토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Q2)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을 분야별로 나누어 시험을 보거나 면허를 받게 되는지?

A) 아닙니다. 현행 문신사법상 국가시험과 면허는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을 구분하지 않고 공통 요소를 중심으로 단일체계로 운영됩니다.
다만, 문신사 개설등록증에 분야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등의 방안을 '26년 하반기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4-2. 개설등록 및 영업

Q1) 현재 세무서마다 문신 사업자등록 개설 가능 여부가 각각 다른데 문신사법이 제정된 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A) 현재 문신 전용 업종코드는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기타서비스업으로의 등록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신 전용 업종코드가 도입(문신사법 시행 이후 시점부터) 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2) 임시개설등록은 현업 종사자에 한정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해당 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빙하는지?

A) 「문신사법」 부칙 제2조의 특례 취지가 현업 종사자의 영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의 증빙 방법 등에 대해 '26년 하반기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3. 향후일정

Q1) 문신사 제도 준비 관련 주요 일정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A) '26년 7월 31일 「문신 표준 시술 지침」 이 배포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은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기적(예시, 연 1회)으로 개정될 예정이며, 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침과 관련한 설명회를 올해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들은 검토 및 논의를 통해 '26년 12월을 목표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후 '27년 1월부터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2) 「문신사 표준 시술 지침」 내용은 확정적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아닙니다. 향후 마련될 문신사법 하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수정·보완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도 현장 적용 상황과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기적(예시, 연 1회)으로 개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